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04월 2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박**	박** 1955-01-09	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	무단전출
안**	안** 1946-02-02	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	무단전출
최**	최** 1969-11-15	강원도 강릉시 가작로303번길	무단전출
정**	정** 1962-11-15	강원도 강릉시 보래미하길	무단전출
정**	곽** 1994-10-05	강원도 강릉시 보래미하길	무단전출
정**	곽** 2003-02-08	강원도 강릉시 보래미하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6-03-03	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	무단전출
김**	김** 2005-12-20	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이 은진 문의전화 : 033-660-3843)

2014년 04월 18일

포남2동장

